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. 5. 31 선고 2018가단489 판결 [전세보증금 반환청구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2018. 5. 17.

판결 선고2018. 5. 31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3. 14.부터 2018. 5. 9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8. 3. 14.로 정정하였다)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김일순

별지